

#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3월 27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2월 19일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2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. 3.26 제9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3월26)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사회복지직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(안 제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조례임.
- 금번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승인에 따라서 집행 기관 정원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

○ 법령의 형식·절차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사회복지직 인원배치 현황과 증원에 대한 인원배치 계획은?	○현재 읍면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, 군에3명이 배치되어 있음. 3명 증원은 순증인원이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군에 1명, 읍면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. 끝 .